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3647호

2021.2.1.(월)



목 차

◆ 고 시

제2021-56호	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	2
제2021-57호	특수판매업 집합제한명령(기간연장)	6
제2021-58호	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	8
제2021-60호	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고시	13
제2021-69호	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(2.5단계 연장)에 따른 노래연습장, 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,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	16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6호

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연장 시행에 따른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시설 방역조치 고시

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연장시행(2021.2.1.)과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, 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업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2월 1일
서울특별시장

1. 기 간: ' 21. 2. 1.(월) 0시 ~ 2. 14.(일) 24시
(행정명령은 2주간, 1주 뒤 다시 판단)
2. 대 상: 서울시 소재 목욕장업, 이·미용업, 숙박업
3. 내 용: 위 기간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내 집합제한 조치
(방역수칙 준수 의무화)
4. 위반 시 조치사항
 -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 - ▶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(10만원)
 - 경고, 3개월이내의 운영중단, 폐쇄명령 등(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-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

5. 업종별 방역수칙

① 목욕장업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①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 ·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 · 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②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③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 · 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④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⑤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16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⑥ 시설 내 음식(물 · 무알콜 음료 제외)을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⑦ 사우나 · 한증막 · 찜질시설의 모든 발한실 운영금지 ⑧ 공용물품 사용장소 이용자간 최소 1m 간격 유지 되도록 구획 표시 ⑨ 세신공간 대화금지 안내문 게시 ⑩ 탈의실내 물품보관함 한칸 이상 간격두어 배정하기	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② 마스크 착용 ③ 시설 내 음식(물 · 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 ④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16㎡당 1명) 준수 ⑤ 사우나 · 한증막 · 찜질 시설의 모든 발한실 이용 금지

② 이 · 미용업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①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 ·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*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 · 이용(권고) **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②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③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 · 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④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	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② 마스크 착용 ③ 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8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④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⑤ 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8㎡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⑥ 21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중단 ⑦ 손님 예약제 운영 ⑧ 손님 음료 제공 금지	

③ 숙박업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① 행사 · 파티 등 주최 금지 * 연말연시 파티, 바비큐 파티, 클럽 파티,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② 전체 객실 수의 2/3 이내로 예약 제한 ③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*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④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운영 금지 ⑤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	①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 · 파티 참여 금지 ②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③ 전체 객실 수의 2/3 이내로 예약 제한 준수 ④ 파티를 위한 객실(이벤트룸 등) 이용 금지 ⑤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

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※ 상기 내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이며,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시 수칙내용은 달라질 수 있음.

6. 법적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
-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 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, 제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- (제1항제2호)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- (제1항제2호의2)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· 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(제3항)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· 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 - － (제2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－ (제4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7. 처분의 효력 발생일: 2021년 2월 1일 00시부터

8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9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제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10. 담당부서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7호

특수판매업 집합제한명령(기간연장)

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기간연장 시행에(2021.2.1. 0시)따라 특수판매업(방문판매·후원방문·다단계)에 대한 기존의 집합제한기간을 2주간 연장합니다.

2021년 2월 1일
서울특별시 장

1. 집합제한 연장 개요

- 대 상 : 서울특별시 내 특수판매업(다단계·후원방문·방문판매, 미신고·미등록 포함) 집합·판매 영업장소
- 기 간 : 2021. 2. 1.(월) 0시부터 ~ 2021. 2. 14.(일) 24시
- 내 용
 - 서울시 특수판매업체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집합제한

사업주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■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방역관리자 지정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■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■ 행사 등 영업활동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■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■ 공연, 노래부르기, 음식제공 등 금지 ■ 시설 허가·신고면적 16㎡당 1명 이용인원 제한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■ 21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 운영 중단	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, 노래부르기 금지 ■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 ■ 시설 허가·신고면적 16㎡당 1명 이용인원 제한 준수 ■ 21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에는 시설 이용 금지

2. 위반 시 조치사항

○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

가. 부과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의2호~4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3조(과태료의 부과) 별표 3

나. 부과사유 : 특수판매업체 시설에서의 감염병(코로나19 등)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·이행 의무부과

다. 부과권자 : 시장·구청장

라. 부과대상 : 서울시 특수판매업체 방역수칙 미준수자(관리자·운영자·이용자)

마. 부과금액

-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가 방역수칙 위반 시 150만원(1차), 300만원(2차) 부과
-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

바. 효력발생일 : 2021. 2. 1.(월) 0시 부터

사. 불복절차

-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음.

○ 고발조치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(300만원 이하의 벌금)

○ 업체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검사·치료비 등 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8호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방역조치 고시

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 (유흥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), 홀덤펍(유사영업 형태 포함) 등, 음식점 및 카페 (무인카페 포함)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2월 1일
서울특별시 장

1. 집합금지 조치

- 기 간 : ' 21년 2월 1일(월) 00시 ~ ' 21년 2월 14일(일) 24시
 - * 코로나19 상황에 따라, 1주 뒤 변동 가능성 있음
- 대 상 : 서울시 소재 유흥시설 5종 (유흥주점, 감성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헌팅포차) 및 홀덤펍
- 내 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
- 위반 시 조치사항
 - 행정조치 위반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발 조치 (벌금 300만원 이하)
 -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

2.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조치

- 기 간 : ' 21년 2월 1일(월) 00시 ~ ' 21년 2월 14일(일) 24시
 - * 코로나19 상황에 따라, 1주 뒤 변동 가능성 있음
- 대 상 : 서울시 소재 음식점 및 카페(무인카페 포함) 및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
- 내 용 :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핵심방역수칙¹⁾ 준수 의무화조치
- 위반 시 조치사항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·이용자에 과태료 부과
 - ▶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(10만원)
 - 방역수칙 위반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
 - ▶ 시설 관리자·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 경고, 2차 운영중단 10일, 3차 운영중단 20일, 4차 운영중단 3개월, 5차 폐쇄명령)
 - 위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고발조치 병행 가능 (벌금 300만 원 이하)
 - 확진자 발생 시 고의성 여부가 인정될 경우 구상권 청구

1) 붙임1 핵심방역수칙 참조

3. 영업형태 정의

○ 음식점 및 카페

음식점	카페
■ 「식품위생법」 상 일반음식점 - 다만,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■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【 분식점, 패스트푸드, 편의점(음식을 조리·판매하는 경우에 한함) 등 】 (식사류와 곁들이는 커피·음료·디저트류) 커피·음료·디저트류(제과제빵, 아이스크림/빙수 등)로 식사 끝에 나오는 음식	■ 프랜차이즈형 카페* * 프랜차이즈형 커피·음료전문점,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,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 ①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(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중 커피전문점, 음료[커피 외]전문점, 제과제빵점, 아이스크림/빙수전문점) 및 ② 직영점 형태 포함 ■ 「식품위생법」 상 제과점 영업 ■ 「식품위생법」 상 휴게음식점·일반음식점 중 커피·음료·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* 분식점, 패스트푸드, 편의점은 제외

○ 홀덤펍

- 「식품위생법」에 의거 일반·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텍사스 홀덤펍 등 카지노 형태의 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·음료·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

○ 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

- 「식품위생법」에 의거 일반·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보드게임 등을 하면서 주류·음료·식사류 등을 함께 제공하는 곳

○ 무인카페

- 「식품위생법」에 의거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득하고 관리자·종사자가 매장 내 상주하지 않으며, 고객이 자판기 등에서 커피·음료·디저트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곳

4. 법적근거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

- (제1항)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- (제1항제2의2호)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- (제3항)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제7호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치 위반자는 300만 원 이

하 벌금

○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

- (제2항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(제4항제1호)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※ 마스크착용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490호 「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행정명령 변경고시」에 따름
 ※ 5인이상 사적모임, 행사 등 금지의 경우 서울특별시 고시 「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」에 따름

5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2월 1일 00시부터

6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7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8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

붙임 핵심방역수칙 1부. 끝.

붙임	핵심방역수칙(조정)	
구분	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음식점 및 카페(무인카페 포함) (휴게·일반 음식점·제과점영업 및 무인카페로 영업하는 식품자판 판매영업)	①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,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·배달만 허용 ②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150㎡ 이상 음식점 :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(의무) - 150㎡ 미만 음식점 :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작성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③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④ 방역관리자 지정 ⑤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⑥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⑦ 영업 전/후 시설 소독(대장작성) ⑧ 50㎡ 이상 시설 대상 I)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 II) 좌석 한칸 띄워앉기 III) 테이블 간 띄워앉기 IV) 테이블 간 칸막이·가림막 등 설치 V) 테이블 또는 좌석 한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%만 활용하기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⑨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⑩ 주문·계산 시 종사자와 이용자 간 거리 두기 - 주문·계산대 앞 칸막이·가림막 설치 또는 종사자와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(바닥표시) ⑪ 주문·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 ⑫ 음식섭취 중 대화자제 안내문 부착 ⑬ 2인 이상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(강력권고) ⑭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 금지	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·배달만 가능 ②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- 실내·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(포장·배달 등)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③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④ 마스크 착용 *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, 주문·계산·대화 및 이동 시 착용 ⑤ 50㎡ 이상 시설 대상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안되어 있거나,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/테이블 한칸 띄워앉기 ⑥ 주문·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 1m) 이상 간격 유지 ⑦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 (권고) ⑧ 2인 이상 커피·음료류,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 (강력권고)
보드카페 등 홀덤펍유사업 (일반·휴게 음식점)	① ~ ⑭ 공통 ⑮ 시설 신고면적 8㎡ 1명을 기준으로 이용 인원 제한	① ~ ⑧ 공통 ⑨ 시설 신고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
뷔페 추가적용	① ~ ⑭ 공통 ⑩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*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⑬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	① ~ ⑧ 공통 ⑩ 공용 집게·접시·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⑪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< 좌석 도식도(예) >

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	
좌석 한 칸 띄워앉기	
테이블 간 띄워 앉기	
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(빨간색 실선 - 가림막)	

- ※ 테이블은 몇인용인지,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, 가림막은 높이 90cm 이상, 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
- ※ '이용자'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0호

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고시

’ 21.1.31.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연장과 함께 방역조치를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1항제2의2호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소재 종교시설(교회, 사찰, 성당 등)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1년 2월 1일
서울특별시 장

1. 기 간 : 2021년 2월 1일(월) 0시~2021년 2월 14일(일) 24시
2. 고시대상 : 서울특별시 관내 종교시설(교회, 사찰, 성당 등 모든 종교시설)
3. 고시내용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■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, 좌석 수 기준 1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% 이내 참여 가능 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 참여 가능 -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게 안내 - 개별 공간(예배실 등)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■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※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박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(숙박포함) 주최 및 음식 제공 금지	■ 정규예배·미사·법회·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간 2m 이상 유지, 좌석 수 기준 10%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% 이내 참여 가능 * 단,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 참여 가능 - 이용자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한 곳만 이용 ■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(숙박포함)*, 식사는 모두 금지 * 수련회, 기도회, 부흥회, 구역예배, 심방, 성경공부 모임, 성가대 연습 모임,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※ 특히, 기도원, 수련원, 선교시설 등에서는 숙박 금지,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·행사(숙박포함) 참석 및 식사 금지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■ 큰 소리로 함께 기도, 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 금지 ■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제공 금지 (물 · 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■ 출입자 명부 관리 - 전자출입명부 설치 · 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 ■ 정수기,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■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■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■ 시설 내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■ 종교행사 전·후 시설 소독 및 환기 ■ 방역관리자 지정	■ 큰 소리로 함께 기도, 암송하는 행위 금지, 성가대 금지 ■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(물 · 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■ 정수기,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■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■ 마스크 착용 ■ 이용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

*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
4. 위반 시 조치사항

-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(제80조), 관리자 · 운영자 300만원 이하,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(제83조) 부과
- 확진자 발생시 확진자와 접촉자 진단과 치료, 방역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

5. 법적근거(처분근거)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」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및 제4항」 등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2월 1일 0시부터

7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

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9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

○ 담당자 : 문화정책과 도근호 주무관(02-2133-2522)

○ 담당자 : 문화정책과 유은혜 주무관(02-2133-2532)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9호

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(2.5단계 연장)에 따른 노래연습장, 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, 콜센터 등 방역조치 고시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, 일반관리시설 중 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,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등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 2021년 2월 1일
서울특별시장

1. 기 간 : ' 21년 2월 1일 (월) 0시 ~ ' 21년 2월 14일 (일) 24시

※ 현행 거리두기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
1주 뒤 변경될 수 있음

2. 대 상

- 서울시 소재 중점관리시설 중 노래연습장
- 서울시 소재 일반관리시설 중 PC방, 영화관, 오락실·멀티방, 직업훈련기관, 대형유통시설* 등
 - * ① 3,000㎡ 이상 대규모 점포 중 ‘한국표준산업분류’ 상 종합소매업
 - ② 「유통산업발전법」 규정(제2조 제3호)에 따른 대규모 점포(도매업 제외)
(예 : 대형마트, 특정 품목(의류·가전·가전용품·서적 등)에 특화된 전문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복합쇼핑몰, 공구·아파트 상가 등 그 밖의 대규모점포)
- 서울시 소재 고위험사업장 중 콜센터 및 보험회사 전화영업점(대리점)

3. 내 용 : 대상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

○ 노래연습장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21시 이후~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▶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	▶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▶ 마스크 착용 ▶ 시설 내 음식(물·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 ▶ 이용인원 제한 준수 (시설 허가·신고면적 8㎡당 1명) - 코인노래방은 8㎡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(대장작성) ▶ 방역관리자 지정 ▶ 영업 전/후 시설소독(대장작성) ▶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(대장작성) ▶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8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▶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 간격 유지 ▶ 시설 내 음식(물 · 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▶ 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, 다만 8㎡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	▶ 이용자 간 2m(최소1m) 이상 간격 유지

○ PC방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 · 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좌석 한 칸 띄어 앉도록 하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▶ 시설 내 음식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 · 무알콜 음료는 허용) 〈서울시 강화조치〉 ▶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* 제로페이 QR인정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	▶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▶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(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, 물 · 무알콜 음료는 허용) ▶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*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〈서울시 강화조치〉 ▶ 흡연구역 1인 사용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▶ 흡연구역 1인 사용 원칙 *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 수 제한 표시 ▶ 좌석 구분 칸막이는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일 것 (예. 앉은 시선 높이) ▶ 손님이 이용한 좌석은 테이블, 헤드셋, 마우스, 키보드 등 소독 후 재사용	

- 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○ 영화관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 · 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* 사전예약제 등 통제 인원관리 ▶ 시설 내 음식 (물 · 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〈서울시 강화조치〉 ▶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* 제로페이 QR인정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▶ 상영관 내 거리두기 좌석 밴딩처리 등 물리적 조치 의무화 ▶ 매표소, 매점, 대기공간 등 이동 시 거리두기 * 고객 이동동선을 바닥에 스티커 등으로 표시 ▶ 출구와 입구 동선 구분	▶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▶ 시설 내 음식(물 · 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 ▶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

- 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○ 오락실 · 멀티방 등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 · 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이용인원 제한 (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8㎡당 1명) *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▶ 시설 내 음식(물 · 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〈서울시 강화조치〉 ▶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* 제로페이 QR인정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▶ 흡연구역 1인 사용 원칙 * 흡연구역 출입구 및 내부 공간에 동시 이용자 수 제한 표시 ▶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실시 후 재이용	▶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▶ 시설 내 음식(물 · 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 금지 ▶ 이용인원 제한 준수 (시설 허가 · 신고면적 8㎡당 1명) 〈서울시 강화조치〉 ▶ 흡연구역 1인 사용

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○ 직업훈련기관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▶ 시설허가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 · 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시설 내 음식(물 · 무알콜 음료 제외)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*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(전일제 학원)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(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)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〈서울시 강화조치〉 ▶ 출입자 명부 관리(4주 보관 후 폐기) -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(의무) * 제로페이 QR인정 - 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) *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 장애인, 단기 체류외국인, QR코드 거부,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▶ 강의실 입구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▶ 수료기준에 맞는 훈련생 조기 종강 권고	▶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▶ 시설허가 · 신고면적 8㎡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준수 ▶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 ▶ 마스크 착용 ▶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(물 · 무알콜 음료 제외) *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(전일제 학원)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, 식당 방역수칙(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/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)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

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○ 대형유통시설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21시 이후 ~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* 온라인 배송 등 비대면 서비스는 가능 ▶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▶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, 테이블 · 손잡이 등 표면 소독(일 2회 이상) ▶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▶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▶ 시식 · 시음 · 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▶ 집객행사 금지 ▶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 · 의자 등)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 및 조치	▶ 마스크 착용 ▶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▶ 시식 · 시음 · 견본품 사용 금지 ▶ 이용객 휴식공간(휴게실 · 의자 등) 이용 금지 〈서울시 강화조치〉 ▶ 문화센터 관악기 · 노래교습 금지 * 단, 하나의 공간(실) 내 1:1 교습시 운영 허용하되, 1~2M 거리 유지하면서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(실) 내 4인까지 허용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〈서울시 강화조치〉 ▶ 백화점 고객 대상 무료 식음료 제공시 시설 내 취식금지 안내 ▶ 문화센터 관악기 · 노래교습 금지 * 단, 하나의 공간(실) 내 1:1 교습시 운영 허용하되, 1~2M 거리 유지하면서 칸막이 설치시 하나의 공간(실) 내 4인까지 허용	

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○ 콜센터

관리자 · 운영자 수칙	이용자 수칙
▶ 소독,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〈서울시 강화조치〉 ▶ 재택근무 등 근무인원 1/2 강력 권고 ▶ 모든 출입자 통제관리 및 모든 근무자 대상 1일 2회 이상 발열증상 점검 ▶ 발열 등 의심환자가 3~4일 내 동시 발생시 (2~3명 이상) 모든 유증상자 대상 코로나19 선제검사 실시 ▶ 직원 간 거리두기(2m 이상, 최소 1m 이상) 및 칸막이 설치(90cm 이상) ▶ 휴게실, 교육장 등 공용공간 이용 제한 ▶ 단체식사 및 대면교육 제한 ▶ 환기(매 2시간), 소독(물품 등 일 2회, 전체 사업장 주1회 이상) 실시 ▶ 일일 방역관리대장 기록 · 관리 ▶ 서울시 소재 콜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	▶ 모든 직원 마스크 착용 〈서울시 강화조치〉 ▶ 증상확인 협조, 유증상자 등 출입 금지 ▶ 사무기기 등 개인공간 소독 등 방역관리 ▶ 구호외치기 등 금지

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 · 운영자 · 종사자 · 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
 * 마스크 착용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

4. 위반시 조치사항

-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·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(감염병예방법 제83조)
 - 시설 운영자 방역수칙 위반(1차 150만원, 2차 이상 300만원),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(10만원)
-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경고,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* 및 시설폐쇄 명령
 -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),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
 - *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경고, 운영중단, 시설폐쇄명령이 가능함

※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위반	5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경고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5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

6. 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1년 2월 1일 0시 부터

7.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며, 처분 당사자는 같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8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9. 담당부서 :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

(노래연습장 02-2133-5238, PC방·오락실 02-2133-5242,
영화관·멀티방 02-2133-5236, 대형유통시설 02-2133-5258,
콜센터 02-2133-5243),
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(직업훈련기관 02-2133-5463)

- 안전한 서울 •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 • 숨쉬는 서울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